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78 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남근·박홍배

정준호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한민수 • 박 정 • 김태년

박해철 • 맹성규 • 윤준병

이용우 · 김주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징계개시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'14일 이내'에 이에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의신청 제도는 어떠한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 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 국민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이에 이의신청 기간을 징계개시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'30일 이내'로 연장하고자 합니다(안 제97조의5).

법률 제 호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7조의5제1항 후단 중 "14일"을 "30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9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7조의5(이의신청) ① 징계개시	제97조의5(이의신청) ①
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	
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	
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	
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	
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	
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	
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	
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	
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	
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	
개월이 지난 날부터 <u>14일</u> 이내	<u>30일</u>
에 하여야 한다.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